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취업본부), 02-970-6857

제정 2012. 11. 6.

개정 2014. 7. 22.

개정 2016. 1. 20.

개정 2020. 8. 14.

개정 2021. 4. 29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 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4.7.22.〉〈학칙개정 2021. 10. 1.〉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현장실습"이란 학생이 재학 중에 기업 현장에 나가 실제 업무를 통해 기업을 경험하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업무를 접목시키면서 통합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.
- 2. "현장실습지원센터" (이하 "센터"라 한다)란 대학의 현장실습교육을 총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설치된 전담조직을 말한다.

- 3. 현장실습은 장기현장실습(코업, Co-op:Cooperative Education Program, 이하 '장기현장실습' 이라 한다)과 단기현장실습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4.7.22.> <개정 2020.8.14.>
- 4. 장기현장실습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2주 이상의 장기 현장실습 과정을 의미하며, 단기현장실습은 방학 또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 현장실습 과정을 의미한다.<개정 2014.7.22×개정 2016.1.20×개정 2020.8.14.> 제3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현장실습관련 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센터장과 부센터장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8.14.>
 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장기현장실습 및 단기현장실습 업무를 총괄한다.<개정2014.7.22.×개정 2020.8.14.>
 - ③ 부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〈신설 2021.4.29.〉
- 제5조(센터 및 직원) ① 센터에는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둔다. 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 - ② 센터에는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.<개정 2014.7.22×개정 2020.8.14.>
- 제6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장기현장실습·단기현장실습의 기획, 운영 및 정기 평가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 - 2. 장기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 참여 우수기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〈개정 2014.7.22〉〈개정 2020.8.14.〉

- 3. 장기현장실습·단기현장실습 지원학생과 기업 간의 연결·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- 4. 장기현장실습·단기현장실습 대내외 홍보 및 확대에 관한 사항<개정 20 14.7.22><개정 2020.8.14.>
- 5. 장기현장실습·단기현장실습 교과목 관련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<개정 2014. 7.22×개정 2020.8.14.>
- 6.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규정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8. 그 밖의 본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과 일반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〈개정 2020.8.14.〉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전산원장, 학사부처장, 학생부처장, 기획부처장,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, 현장실습지원부센터장으로 하며, 일반직 위원은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, 센터장이 추천한 외부 산업계 인사 중에서 총장이임명(위촉)한다.〈개정 2014.7.22〉<개정 2020.8.14.〉</p>
 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, 일반직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0.8.14.>
 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연도별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추진상 황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- 2.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의 강화·문화 확산·기반 조성을 관한 사업의 추진 및 변경에 관한 사항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- 3. 산학협력 전담교수의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 활용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- 4.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<개정 2014.7.22><개정 2020.8.14.>
- 5.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장기현장실습과 단기현장실습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개정 2014.7.22.><개정 2020.8.14.>
- 제8조(자문위원회) ①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현장실습센터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<신설 2020.8.14.>
 - 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.<신설 2020. 8.14.>
 - ③ 외부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·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20.8.14.〉
- 제9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회의 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사항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.

-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0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한다. <개정 2021.4.29.>
- 제11조(회계처리) 센터의 사업비 관리와 회계는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 사업기간 중에는 「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 운영 규정(교육부 훈령 제252호)」 및 전문기관의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며,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) 육성사업 종료시에는 대학이 관리한다.<개정 2014.7.22>
- 제12조(운영세칙 등)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.<개정 2014.7.22×개정 2020.8.14.>
 -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
부칙(제154호, 2012.11.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254호, 2014. 7. 2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10호, 2016. 1. 2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54호, 2020.8.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09호, 2021.4.2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